

문서번호	교육청소년과-5713
결재일자	2015.3.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이동청소년과장	교육청소년과장	교육문화복지장	부구청장	
유현정	황지연	최병재	도일환	03/12 代손정수	
협 조	기획예산과장		이용식		
	규제개혁담당		김용환		
	주무관		김하연		



#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 개정 계획

2015. 3

교육문화복지국  
교육청소년과

#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 개정 계획

성북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의 “어린이”라는 용어를 “아동”으로 개정하고자 함

## I 관련근거

-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
  -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함
- 아동복지법 제3조
  -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

## II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
  -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과 「아동복지법」 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됨
  -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”의 경우 그 대상이 어린이로 되어 있음

### Ⅲ

## 주요 개정 내용

#### 제명 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⇒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
#### 조문 개정

- 조례 제2조 2호 중 “12세 이하의 어린이” ⇒ “18세 미만의 사람”
- 조례 제1조 ~ 제10조, 제14조, 제16조의 내용 중 “어린이”와 “어린이 친화도시” ⇒ “아동”, “아동친화도시”로 변경

### Ⅳ

## 향후 일정

입법예고 : 2015. 3. 19 ~ 4. 8

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 : 2015. 4. 13

구의회 상정 : 2015. 4. 23 ~ 5. 2(제234회 임시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